

##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최 병 선\*

.....<목 차>.....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III.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
II. 시장질서와 '사회정의'의 관념	IV. 결론 및 평가

### 〈요 약〉

이 글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에크 대작 *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 집약되어 있는 그의 철두철미한 자유주의 사상의 체계,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무제한적인 정부개입에 대한 신랄한 비판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규제완화, 민영화, 분권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의 사상적 기초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변화들이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하이에크의 사상을 펼차고 재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왜 인류문명 발전의 기초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한껏 확대되고 있는 국가개입이 궁극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은 사회주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민주화, 자율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자유의 보장, 자유시장경제의 찬탈, 국가권력의 제한이 없이는 인류문명은 퇴보를 경험할 수 밖에는 없다는 하이에크의 경고에 귀기울여 봄직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스유로운 사회(Adam Smith의 Great Society, Karl Popper의 Open Society)의 근간은 무엇인가? 왠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명을 발전시켜 온 불가결의 기초 또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당혹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Hayek는 그것은 결단코 개인의 자유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기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일반화 되는 생각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누구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태에 20세기 문명이 전체주의(특히 사회주의)로 빠져들어 가게 만든 주범이라고 간파하였다. 그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인간의 의도적 설계의 산물(product of deliberate design)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형성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sup>1)</sup>의 결과라고 보면서, 이례적 사조야말로 지난 200년간의 학문, 특히 Marx와 Freud로 대변되는 근세과학 저지른 명백한 ‘과학적 과오(scientific error)’라고 단정한다(III:153-76).<sup>2)</sup>

Fayek의 세계관은 진화적 합리주의(evolutionary rationalism)이다.<sup>3)</sup> 그는 인류사회는 어느 누구의 의지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고 본다. 모든 사회진화과정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 진화는 누가 그렇게 의도하거나 예견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진화과정이 문명진보로 나아가는 것도 그것의 자연발생적 성격 때문이라고 본다. 형성적 합리주의자의 주장과 같이 사회과정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 지시된다면, 사회는 그것을 지시하는 자가 예견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사회는 정부가 사회과정에 새로운 생기를 입혀서가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이 시험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진화론적 관점이다.

다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자연발생적 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수많은 인간의 각각의 지식에 기초하여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화적으로 생성된 개인 행동규칙으로서, 이것은 개인의 영역(individual domain)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초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범되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영역으로 생각한다. 위대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는 사회로서,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쳐서 법(혹은 규칙)과 사회의 관계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Hayek의 주장이다.

1) 이것을 Popper는 “천진난만한 합리주의(naive rationalism)”라고 부른다(Popper, 1973: II, 224-258).

2) 이 글의 각주에서 로마체는 3권으로 되어 있는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의 각권을 표시하고 뒤의 아라비아 숫자는 페이지임.

3) Popper는 이것을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라고 부른다(Popper, 1973: II, 224-258).

아래에서는 우선 Hayek가 그의 자유주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차례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어서 제Ⅱ절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그의 독특한 이해와 설명에 어떻게 접하되어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제Ⅲ절에서는 Hayek의 사상 가운데 정치경제학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려고 한다.

### 1. 인간의 무지(ignorance)

Hayek의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의 무지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개인도 사회의 구체적인 특정사실과 상황(particular facts and circumstances), 그것의 결과 또는 그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알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모든 특정사실과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목적,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질서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Hayek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형성적 합리주의라고 명명하고, 형성적 합리주의는 인류문화의 발전과정과 발전요인을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진화적 합리주의자인 Hayek는 사회질서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산물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이 무한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실들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성공적 경험을 통하여 진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도덕률, 관습, 전통 등은 모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반복적 경험과 진화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Hayek는 그 전체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분적인) 지식, 개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또는 서로 달리 파악하고 있는) 지식의 활용(utilization of widely dispersed knowledge)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이고, 이러한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진보해 왔다고 본다. 사회는 각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모두가 좀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I:13-14). 현대사회와 같이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즉, 지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사회)에서 더욱 더 무지해질 수 밖에 없는 개인이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결과가 사회안에서 각 개인이 자기의 지식을 활용

하○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이 때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다.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개인영역(individual domain)의 확보이다. Hayek는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개인행동규칙들(rules of individual conduct)은 인류공통의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진화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모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영역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Hayek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행동규칙은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개인행동규칙이 어떤 특정독적 성취를 염두에 두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어떤 개인의 자유와 그의 개인영역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이 때 개인행동규칙은 보편성과 추상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Hayek는 개인행동규칙의 보편성과 추상성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이것을 특정 사실에 대한 인간의 무지 속에서만 보장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특정사실과 상황의 결과를 알지 못할 때에만 인간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인행동규칙에 합의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sup>4)</sup>

## 2.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grown order, cosmos)

Hayek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는 그것이 “인간의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조직)의 행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위적 질서(made order, taxi:)가 아닌 자연발생적 질서라고 주장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생적으로 주어진 질서가 아니라 내생적으로 자라난 질서라는 것이다.

우리는 질서라고 하면 흔히 그것이 비교적 단순하고 구체성이 있어서 그것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만을 질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자연발생적 질서는 상당히 광범하고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이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기란 불가능한 질서, 또한 구체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추상적 질서(abstract order)라고 말할 수

4) 이러한 주장은 John Rawls가 그의 「정의론」에서 설정한 original position의 상황 및 개념과 흡사하다. 사실 Hayek는 Rawls가 ‘사회정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만이지만, 그의 정의의 개념규정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II:100).

5) Hayek는 질서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고 권위주의적인 합축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질서라는 말을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구성요소가 상호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체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부분에 대해 알게 되면 나머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에

있다(I:36-40).<sup>5)</sup> 그러나 이 질서는 개인들 각자에게 부분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만, 그 전체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인위적 질서 또는 조직의 질서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서 생겨나지만, 자연발생적 질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행동규칙을 준수하는 결과로서 생겨난다. 물론 이 규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규칙이다. 이 규칙은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짐이 없이 작동하는 규칙이다(I:43). 이 규칙은 사회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방향으로 개인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누가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고 인류의사를 통해 진화해 온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한 자연발생적 사회질서 안에서 개인은 그가 알고 있는 특정상황에 반응한다. 만일 개개인이 어떤 규칙—즉 어떤 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규칙—to를 준수하기만 한다면, 개개인의 특정상황에 대한 반응은 어떤 전체적 질서를 만들o 낸다(I:44). 이 때 개인행동들 사이에 약간의 유사성(그것도 어떤 추상적인 면에서)이 있으면 그것으로족하다. 개인들이 어떤 규칙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된다면 전체적 질서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발생적 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은, 유사한 상황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규칙, 도덕과 관습에서 비롯되는 규범적 규칙,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강제되는 법률적 규칙(rule of law)<sup>6)</sup> 중 어느 하나의 속성을 갖추어야만 한다(I:45).<sup>7)</sup>

사회는 개인이나 조직의 협력과 이들의 행동의 효과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조직의 질서(또는 인위적 질서)와 자연발생적 질서에 의존해서 이루어

“여기 상당히 정확한 기대(expectations)를 형성 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I:36).

6) 오토 rule of law라고 하면 법의 지배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규칙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처음 두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발생적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의 법의 규칙은 인위적 규칙이므로 자연발생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규칙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칙이 적용된 결과로 얻어진 결과적 질서(resulting order)는 당연히 자연발생적 질서의 일부이다. 이것은 그 규칙의 고안자도 그것이 특정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규칙이기 때문이다.

진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나 조직의 질서와 자연발생적 질서는 공존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질서가 공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두가지 질서를 자유자재로 배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조직들 혹은 개인들사이의 조정은 자연발생적 질서의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I:46). 가족으로부터 기업과 정부에 이르는 모든 조직은 결국 사회와 불리우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verall order)로 통합된다.<sup>8)</sup>

다만 정부는 강제적 기능과 서비스기능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 우선 서비스기능 측면에서는 정부도 사회라는 자연발생적 질서에 속하는 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의 강제력에 입각하여 자연발생적 질서를 보존 유지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정부는 자연발생적 질서에 포함되지 않는다(I:48).

Hayek는 사회에는 세가지 차원의 규칙이 있고, 자연발생적 질서와 조직의 질서는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규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조직의 질서는 (1) 세부적인 명령(specific commands)과 (2) 조직원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명령보조적인 규칙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 두가지 규칙은 모두 조직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구체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연발생적 질서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규칙은 목적독립적(end-independent)이며,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다. 따라서 이 규칙은 개인이 각자의 지식과 목적에 비추어 적용할 수 밖에는 없는 규칙이고, 개인이 그것의 존재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조차 없는, 어떠한 공통목적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이다(I:50). 일반적인 법률적 규칙(general rules of law)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그것의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도 모르고 예전 할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규칙(abstract rules)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떤 질서가 겨냥하고 있는 목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특정 상황에 따라 개인행동이 결정되어야만 할 부분은 커지며, 그 결과 통제(control)는 세부적 명령보다는 규칙에 보다 많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하여 고도로 복잡한 사회의 질서

8) Hayek는 사회 그 자체를 자연발생적인 전체적 질서이다(I:49). 이것은 그가 사회를 “구성원들이 어떤 추상적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인간행동의 질서” 또는 구조(orderly structure of actions) 또는 개인행동의 “추상적 관계의 체계(system of abstract relations)” (II:95)로 정의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는 것적으로 규칙, 그것도 전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규칙에 의존하지 않을 뿐 없다. 사실 고도로 복잡한 사회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낸 규칙은 처음에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여 고안해 낸 (의도적인) 규칙이 아니라, 우연히 어떤 규칙을 채택한 결과 문명이 발전하고, 그것이 또 다른 문명사회로 전파되면서 그것의 우수성이 입증된, 진화적으로 발전해 온 규칙이다.

이 낸 의미에서 볼 때 근대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의도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역설적인 것으로서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결산이다(I:51). 현대사회의 극도로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을 지시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질서의 형성에 이로운 규칙을 강제하고 개선해 나가는 간접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발생적 질서를 조직의 질서로 바꾸면서 동시에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식을 활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 지시명령 방식으로 자연발생적 질서에 간섭함으로써 그것을 개선하거나 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발생적 질서와 조직의 질서를 혼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 직접적 지시명령은 자연발생적 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연발생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조화를 파괴한다. 지시명령은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한다. 이것이 Hayek의 시장질서에 대한 간섭과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에 대한 철저한 반론의 골자이다(I:51).

### 3. 정의(justice)의 판별

Hayek는 정의는 오로지 인간행동에 대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대하여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상태가 누군가의 의지의 결과이고 누군가 그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 또는 자연발생적 질서의 구체적 결과는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good or bad)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just or unjust)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Hayek는 후술하는 것처럼 ‘사회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의 무의미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II:33).

물론 개인행동만이 아니고 많은 개인의 단체적 행동 또는 조직의 행동에 대해서도 정의 여부를 말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정부이다. 우리는 정부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정부가 개인에 대해 요구하는 행위가 정의로운가 여부는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비추어 판단되어

○·지, 그 규칙의 구체적 적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도·전대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인간행동의 질서의 국면만이  
것의 문제를 야기한다.

정의는 항상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해  
줄다. 이 때 개인이 지는 의무는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되  
는 상황을 규정하는 규칙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자연발생적 질서를 형성하는 개인행동규칙은 질서의 추상적 속성만을 결정할  
뿐 그것의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다(II:33). 이것은 이 규  
칙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추상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와 관련된 추상적  
규칙은 거의 예외없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부정적 또는 소극  
적(negative) 규칙들이다.<sup>9)</sup> 이처럼 추상적 규칙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소극적)  
규칙으로 구성되는 것은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물론 정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  
나 정의의 필요조건이 됨은 분명하다.<sup>10)</sup> 또한 현실적으로 정의로운 행동규칙이  
부정적 성격을 띠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규칙이 어떤 특정 목적을 공  
유하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타인이 간섭해서는  
안 될 개인과 집단의 고유영역을 규정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II:36-7).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개인행동규칙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정통성 있는 기대(legitimate expect-  
ation)만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개인행동규칙은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  
여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러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만을 규정할 뿐  
이다. 요컨대 개인행동규칙은 각 개인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자기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범위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를  
물해 주는 데 그것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상황  
에 따라 결정되는 행동규칙의 적용결과를 보고 그것의 정의 여부를 판단할 수

9) 예를 들면 추상적 규칙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보통법에는 “위험에 처한 사  
람을 구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규정만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부정적 규정들이다.

10) 이것은 Karl Popper의 말과 같이 지속적으로 거짓된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제  
거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진리 또는 정의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결  
코 궁극적 진리 또는 정의를 실현했는지를 확신 할 수는 없다는 경계를 확인시켜 준  
다. 참고로 Hans Kelsen 등 범실증주의자들은 정의의 객관적 기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II:44-56).

는 없다. 정의로운 행동규칙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방식이다. 그 규칙은 이것을 확보함으로써 개인행동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시키고 그에 따라 개인간의 협력을 조장하며 갈등을 예방하는데 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Hayek는 이러한 관념—즉,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정의라고 하는 관념—은 인류사회가 목적으로 연결된 (ends-connected) 사회로부터 규칙으로 연결된 (rules-connected) 사회로 진화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본다. 또한 그 규칙은 누구의 의지나 이해관계나 기타 특정한 결과를 지향하는 유사한 목적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세대를 경과하면서 그러한 규칙의 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본다.<sup>11)</sup>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규칙은 점차 구체적 목적과 무관하게 되고, 그 결과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규칙으로 진화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수많은 개인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에 위계(hierarchy)를 부여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특정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상, 추상적이고 목적독립적인 정의로운 행동규칙을 준수하는 것.] 곧 정의라는 관념이 발전해 온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정의가 결코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특정집단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II:39). 정의는 특정행동이 문제적으로 초래하게 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간의 필연적 무지에 대한 적응(adaptation), 다시 말하면 모든 구체적 사실을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본다(II:39).

우리는 흔히 어떤 특정 결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나 소망을 달성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Hayek는 이러한 우리의 주관적 혹은 직관적 정의 관념은 그릇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규칙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주관적 감각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구체적 상황속에서 생각을 바꾸어 이제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아주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규칙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

11) ㄷ.는 미래적으로도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법가가 어떤 새 통.을 규칙을 제정하려 할 때에는 그 규칙이 과연 특정결과를 성취하는 결과는 무관한가. 그리고 그 규칙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람들은 그 규칙을 수정하려 하거나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 규칙은 정의로운 규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Hayek는 인류문화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인간의 직관적 인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intellect)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든 자기가 정의롭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정말 정의롭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여부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뜻이다. 내가 정의롭다고 믿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그 규칙이 내가 믿는 또 다른 규칙과 병존할 수 있는가, 그것과 일관성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 4. 법의 지배의 원리

Hayek는 오늘날 법의 개념과 기능이 크게 바뀌었다고 본다. 원래 법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 각 개인이 자기가 선택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영역(individual domains)을 보호하고, 개인이 지켜야 할 정의로운 개인행동규칙(rules of just individual conduct)을 규정한 법, 즉 私法(nomos, private law)만을 지칭하였으나, 점차 조직(특히 정부)의 활동을 지시통제하기 위한 公法(thesis, public law)의 입법이 증가하면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법의 의미가 크게 변질되고 말았다고 분석한다.

이는 자유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목적독립적인 규칙, 자유사회와 자발생적 질서를 형성하는 기초인 정의로운 개인행동규칙(사법과 형법)——이 규칙은 계약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포함한다——만이 개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밖의 모든 법은 목적의존적인 조직의 규칙(rules of organization)으로서, 그것은 정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ayek는 이러한 법의 기본원리가 무너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정의에봉사하는 법에 대한 신념을 상실한 나머지 특정이익(또는 정부의 특정목적)에 봉사하는 법(즉 공법)마저 법으로 친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Hayek는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심히 위축되게 된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II:34). 또한 오늘날 법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양자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서로 상충된다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것도 법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구분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한다(I:51-2).

## II. 시장질서와 ‘사회정의’의 관념

### 1. 시장질서(catalexy)<sup>12)</sup>와 경쟁

Hayek는 자연발생적 질서의 전형이 바로 시장질서라고 본다. 그에게 있어서 시장질서는 서로 다른 개인의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목적을 융화(reconcile) 시켜 줌으로써 사회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있도록 해 주는 질서이다. 그는 시장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미리 정해진 구·통목적의 부재(absence of prescribed commonends)야말로 자유사회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의미있게 한다는 것이다. 목적으로 연결되어(ends-connected)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는(means-connected) 사회가 바로 Hayek가 말하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이다.<sup>13)</sup>

Hayek는 서로 다른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없이도 상호주의 원리(principle of reciprocity)에 입각하여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인간에게 알려진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시장이라고 말한다(II:113). 시장에서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개인들이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사이적 목적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그 개인이 염려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의 욕구(목적)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개인이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주·진시켜 준다(II:110).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식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격이다(II:117). 가격은 고도로 축약된 정보전달 수단이다. 가격에 반영되는 또는 귀착되는 모든 정보(sum of information)는 전적으로 경쟁의 소·물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한 것인가는 시

12) Catalexy라는 말은 희랍어 kataleksia에서 유래한 영어로서 시장에서 수많은 개인 경제주체의 상호조정(mutual adjustment)을 통하여 얻어지는 질서를 말하며, 이것 은 재산권(property), 불법행위(tort), 계약(contract)에 관한 법의 지배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연발생적 질서의 특별한 유형이다.

13) 위대한 사회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에서 강조되는 단결(solidarity)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상으로는 이 두가지는 서로 상치된다. 자유문명의 기초는 특정 목적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가능성 또는 최소한 그것에 합의하도록 강제하지 않음에 있다(II:111).

조에서 결정되는 가격 또는 보수(remunerations)에 달려 있다. 가격과 보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what they ought to do)를 가르쳐주는 신호이다. 경쟁은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해 주고, 사회가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클라내도록 도와주는) 발견절차로서 가능하다(Competition operates as a discovery procedure)(III:67-8).

경쟁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이 생길만한 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든다. 그가 얻게 되는 이윤이 비록 일시적 이윤(temporary profits)에 불과할지라도 이 이윤을 제거한다면 그의 추가적인 노력은 기대할 수 없다(III:70-71). 경쟁이 작동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생산되고 생산되는 모든 물건은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며, 모든 물건은 가장 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경쟁이 만들어 내는 이러한 결과는 분명 놀라운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결과는 정부간섭에 의해 경쟁이 제약되거나, 정부가 개인이나 조직이 경쟁을 제약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거의 언제 어디서나 달성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태는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정부가 경쟁을 제약하거나 개인 및 집단이 경쟁을 제약하게 허용하였기 때문이고, 중앙집권적 계획방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III:74).

Hayek는 우리가 아직껏 경쟁이 성취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한다. 경쟁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지식과 재주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Hayek는 흔히 경쟁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쟁을 배척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못박는다(III:74-75). 또한 경제이론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에 경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이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합리적이어야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앞에 가는 자를 뒤쫓아 가야만 할 필요(need to emulate)를 느끼게끔 한다는 것

이디(75). 경쟁과 경쟁을 허용하는 전통이 합리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6). 그는 고도로 발달된 상업정신은 효과적인 경쟁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과라고 본다(II:75).

시장경쟁의 결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도 대단히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Hayek의 생각이다. 시장에서의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富를 창출하는 게임(wealth-creating game)으로서 그 속에서는 누구도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게임의 결과는 오로지 개개인의 재주와 우연(skill and chance)의 결합에 의해 결정될 뿐이고(II:115), 따라서 시장게임의 결과는 각 개인이 시장게임에서 얻는 둑의 진정한 최대치(true maximum)라는 것이다(119). 그것은 각 개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의 가치(merit)와는 기능적으로 무관하다. 그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소득 및 부의 분배상태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각 개인의 재주와 우연에 좌우된 것인 이상, 그것의 도덕성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sup>14)</sup> 재주와 행운(luck)이 연출해 내는 것이 시장게임이므로 예기치 않은 상황변화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부수(소득)가 가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 그들은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의 계획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신호)기능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117).

시장질서에 대한 또 하나의 주된 불만은 흔히 예기치 못한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물질적 지위(material position)가 저하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그러나 시장질서의 맥락 속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bygones are forever bygones)”일 뿐이다(121). 시장질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또는 미래를 지배하게 될 조건)만을 감안한다. 과거의 조건(conditions)이 어떠하였는가는 외부적 상황이 변화한 현재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과거에 성취한 지위를 상실한 위험에 처한 집단에 특별한 노력과 특혜를 베푸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시장게임을 왜곡시키게 된다(122).

이 퀸 의미에서 볼 때 시장질서에 대한 정치적 간섭(정부개입)은 그것이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Hayek의 기본론이다. 시장질서에 대한 간섭은 특정한 결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다.

14) 이 주장의 논거는 뒤의 ‘사회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간섭이 특정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별개의 강제행위(*isolated act of coercion*)인 이상, 간섭은 항상 전체적 질서(overall order)를 교란시키고, 자연 발생적 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parts)의 상호조정을 가로막는다. 간섭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정한 결과가 시장질서와 배치됨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서 간섭은 언제나 정의롭지 못한 행위(unjust act)이다. 왜냐하면 간섭은 차별적으로 강제를 받아야만 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한편, 이들의 희생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II:129).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도덕적 측면에서 경쟁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경제영역 안에서든 밖에서든 경쟁은 누가 최선인지를 가려내는 (발견) 절차(procedure)이다. 시장게임에서든 시험이나 스포츠게임에서든 경쟁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낼 뿐, 각자의 능력이 한껏 발휘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경쟁은 과학실험과 같다. 실험결과를 미리 알 수 없듯이 경쟁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여 경쟁은, 만일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필요로 하지 않을 발견절차이기 때문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II:69). 또한 실험결과를 기대했던 것과의 일치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논센스이듯이, 경쟁이 어떤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논센스이다. 우리가 실험의 가치를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실험이 이루어진 조건에 따라 판단하듯이, 경쟁의 가치도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이 이루어진 조건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다.

## 2. 사회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

이상에서의 Hayek의 논지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인의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치열한 비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적으로 말하여 그는 사회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sup>15)</sup> 앞에서 그의 정의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듯이, 그는 오직 인간행동(human conduct)에 대해서만 정의 여부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II:31), 인격적 존재가 아닌 사회에 대하여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를 擬人化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과오(category mistake)라고 주장한다(II:31).

그는 ‘사회정의’라는 말에서 ‘사회적(social)’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를 어원적으로 분석하면서, 원래의 사회라는 말의 뜻대로라면 분명히 하나의 사회·현상인 정의에 ‘사회’라는 형용사를 덧붙이는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

15) 그는 ‘사회정의’ 한 말에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다.

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의’라는 말 속에서의 ‘사회’는 사회의 산물 혹은 사회과정의 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어떤 관념(conception)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II:78).

그는 ‘사회정의’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만해도 당시의 지배계층이 다수의 가난한 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또는 그들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사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특정한 물질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고, 또한 개인인이 ‘받아야 할(due)’ 뜻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고, 사회를 의인화함으로써 마치 사회가 도덕적 원리에 따라 이끌어질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주체(subject)이기라도 한 것처럼 사회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II:79).

Fayek는 사회정의는 오로지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지시되는 지시명령적 경제에서의 의미를 지니고, 또한 오로지 중앙통제적 체제하에서만 현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II:69). ‘사회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라는 말은 오로지 조직(organization)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II:33). 따라서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질서 안에서 ‘사회정의’는 무의미하고 아무런 내용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편익과 비용이 분담되는 방식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결과가 특정인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미리 의도되거나 예견될 수 있는 결과도 아닌 이상,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의롭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정인에 대하여 어떤 뜻을 보장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한다(II:64-5). 더 나아가서 어떤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분배패턴(그것이 있다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되는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한다(II:64).

즉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시장체제 안에서 ‘사회정의’를 요구할 때 그것은 물질적 보상면에서의 평등(equality)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물질적 보상을 분배

해야 하는 어떤 인간적 존재를 상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인식 가능한 규칙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체제 하에서 소득은,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는 신호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가격은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이 공익을 위해서 또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줄 뿐이다.

물론 시장게임이 개인의 지식과 노력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운에 좌우되는 이상 때때로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 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negative feedback)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불가피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한 개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II:71). 이미 의미에서도 시장게임이 속임수없이 공정하게 치루어지기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게임결과가 모든 행위자에게 공평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넘센스다. 누구나 시장에서 가장 좋은 보상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의 의도나 동기가 좋아서, 또는 그에게 그런 보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에베레스트산에 등반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등반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장질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상의 정의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 때문에 정당화 된 것도 아니다. 시장질서 안에서 정의는 시장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만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John Locke 등이 내세운 정의의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 Hayek의 생각이다.

흔히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사회정의’적 견지에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Hayek는 이 모든 경우에 비판적이다(II: 91-93). 우선 하층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장외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직업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유로이 선택한 것이고 따라서 그가 받는 댓가는 그가 치뤄야 하는 회생과는 관계없이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비판적이다.

다음으로 보다 일반적인 경우로서, 사람들이 이미 달성한 물질적 지위의 상

실<sup>o</sup> 나 그것으로부터의 전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거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불운은 시장기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본다. 어떤 경제활동이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변화만이 사람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한한 사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산된 지식의 활용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존의 소득과 지위의 상실을 피해로 인식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그러한 소득과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생각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Hayek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소득과 지위 역시, 도덕적으로 그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질서 속에서 그렇게 된 것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 시장질서 속에서 각자가 얻은 편익은 순전히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를 지킨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장결과—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기존의 물질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의 지위를 가능하게 한 소득기회 조차를 부정하는 풀이 된다고 본다(II:95). 만일 ‘사회정의’란 미명하에 정부가 특정집단의 소득보호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이익에 반한다는 의미에서도 반사회적(unsocial)이라는 것이다.

□ 나아가서 Hayek는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가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비대호하고 급기야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최대의 위협요인임을 역설하고 있다. ‘사회정의’ 요구는 단지 정부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보편적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새로는 책임(법과 질서의 유지 및 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하지 않은 과업)을 떠맡을 것을 요구하게 되며(II:82),<sup>16)</sup> 이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지위가 정부의 행위<sup>o</sup>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이들은 정부가 분배적 정의에 대한 구체

16) ‘사회정의’를 앞세운 정부개입을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Hayek가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시장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나 법의 지배와의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노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장기능이 정지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적 계획(scheme)을 갖도록 고집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다른 개인과 집단의 지위를 정부가 통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Hayek는 이것을 ‘사회정의’ 요구가 만들어 내는 독특한 자기가속적 경향성(self-accelerating tendency)이라고 표현한다.

Hayek는 ‘사회정의’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정치행동을 지배하는 한 그 사회는 점차 전체주의 체제로 가까이 접근해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II:68).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성과 처지가 각각 다르고, 이것을 정부가 수정할 수 없는 이사, 정부가 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하고,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의 명령지시가 시장질서를 대치하게 되면 보상은(개인이 어디에 자신의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해 주는) 본래의 신호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정의롭다고 불려질 수 있는 분배패턴을 만들어 낼 개인행동의 원리가 없는 한, 정부(중앙기획기구)는 정의나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효율과 편의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사회정의’ 또는 평등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이유로 오로지 전체주의적 권력을 가진 정부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요컨대 만인에 대한 완전한 평등은 어떤 일련의 명령에 대한 만인의 굴종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 런 의미에서 Hayek는 언뜻 보기에도 지극히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기 쉬운 ‘사회정의’라는 말이 암말로 자유사회에 전체주의가 들어서게 만든 트로이의 목마였다고 규정한다(II:136). 또한 ‘사회정의’는 서로 다른 집단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반사회적이며,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악의적이고 해로운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진실된 도덕감정을 말살시켜 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II:97-9). ‘사회정의’는 언제나 정의를 앞세우나 이것은 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직화된 집단의 권력투쟁이 되고 있다(II:137)고 갈파한다. 또한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 암말로 오늘날 인류사회를 전면적인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체제로 몰아가고 있는 주범이라고 공격한다. 또한 ‘사회정의’라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남용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성을 부추기고 있는 현대의 지식인들의 무책임성에 대해서도 무렬하게 비난한다(II:97).

### III.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

#### 1. 이익집단, 정부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이상에서 고찰한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은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의 대체를 이룬다. 그는 오늘날 특정집단의 특수이익 확보를 위한 정부행동과 정권이 하나같이 ‘사회정의’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사회정의’의 요구는 준종교적 미신이거나 “도깨비불”처럼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II:66), 오늘날 ‘사회정의’란 말이 “열려라 참깨(Open sesame)”와 같은 강렬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터득한 특수이익집단들이 ‘사회정의’를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고, 정부에 집중된 무한한 권력(unlimited power)은 정부의 부당한 강제로의 행사를 초래하고, 급기야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것이다(II:67). 이런 의미에서 Hayek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착취자는 이기적인 자본가나 기업가, 또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내세워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화된 이익집단들(organized interests)이라고 본다.

상과 같은 Hayek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근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무한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는 정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III:3).

Hayek는 오늘날 정부가 무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주적 절차만 따른다면 정부권력에 대한 다른 어떠한 제한도 불필요하다는 우리의 비극적 환상과 여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신념—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한 권력의 전제화는 탁을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때문이라고 본다.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리가 파괴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본다(III:24). 오늘날 의회는 본래의 입법권한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와같이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두가지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부터 민주주의가 본래의 이성과는 괴리된 파행의 길을 걸게 되었다는 것이 Hayek의 특별한 관점이다.

법권한과 행정권한을 의회의 손에 몰아주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화해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 법 아래의 정부

(government under the law)라는 이상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III:25). 의회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정의로운 행동규칙 또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률의 제정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임무로 삼게되면, 실지적으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모두 보편성과 일반성을 상실하고 특수성과 편파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본래의 의의와 기능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연발생적 질서의 필요보다는 정부조직(organization of government)의 필요에 봉사하게 되며, 점차 행정기구의 자의적 권력을 증가시키고,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쉽도록 돋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III:26).

Hayek는 인류역사상 현대정부처럼 수많은 특정집단의 특수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할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정부가 무제한적 권력 또는 전능한(omnipotent)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제력(self-restraint)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집단의 희생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Hayek는 근대의 민주주의를 협상민주주의(bargaining democracy)라 부르고 있다(III:99).

Hayek는 정부의 자의적 권력의 행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입헌민주주의가 오늘날 무제한적 정부권력을 부활시키고만 모순적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은 주권(sovereignty) 개념을 형성적 합리주의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III:33). 다시 말하면 사회가 생기고 나서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행동규칙이 사회를 형성한 것임(III:33)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는 국민들이 다수결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공동규칙을 채택해야만 생겨나는 것으로 본 나머지 다수의 국민(또는 그의 대변자의 다수)이 합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중적 주권(popular sovereignty)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념 속에서 의회의 기능이 본래적 의미에서의 입법에서 벗어나 정부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결국 정부가 어떤 규칙에도 구속되지 않는 무제한적 권리자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 개념 또는 법의 지배의 개념의 변질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III:100). 오늘날 의회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 의회의 주권성은 법의 주권성(sovereignty of law)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입법부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라면 모두 법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Hayek는 맹렬하게 비판한다(II:4). 법의 지배의 개념은 법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법은 우습게도 그것의 원천, 다시 말하면 의회가 만든 것이라면 그것이나 법이 되고 말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수(majority)가 동의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구속력을 갖는다는 믿음으로 의 변화는 얼핏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Hayek는 그것은 정부의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자연을 생활 질서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부로부터 무제한적 권력을 갖는 정부로, 또는 공인된 절차를 통해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체제로부터, 한 집단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공동관심사로 선언하고 그것을 공인된 절차를 경유하게 하는 체제로 오늘날 정부의 관념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정부관념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공통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의 정부관념은 어떤 조직화된 집단에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압제의 구실을 쉽게 제공한다(III:7)는 것이 Hayek의 생각이다.

의회가 어떤 규칙의 보편적 적용에 자신을 복종시킬 용의가 있을 경우에만 의회의 결정은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는 다수의 지배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보편적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오늘날 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다수의지(will of majority)’라는 말은 지극히 허황된 것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의 유지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특수이익집단을 돋는 것에 대한 합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의 이익을 분배할 일반적인 도덕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한 오로지 제한적인 권력을 갖는 정부만이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것이 Hayek의 주장이다. 정부가 특정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정부는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패하지 않은 정부,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강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모든 사회불만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믿게 만드는 무한한 권력(Hayek는 이것을 정치인의 장식뿔(cornucopia)

이라고 부른다)을 제거해야만 한다(III:11)고 주장한다. 또한 조직화된 집단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권력을 제한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III:16).

절대군주국가로부터 무제한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지난 2세기동안 입법정부의 위대한 목표는 정부권력의 제한이었다. 권력분립, 법의 지배, 법 아래 있는 정부, 공법과 사법의 구분, 소송절차의 규칙 등 중요한 원리들은 모두 개인에 대해 강제력(coercion) 행사가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일반적 이익을 위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균일한 규칙(uniform rules)에 따라서만 강제력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원리들이 부차적인 위치로 떨어지고 망각되면서 무제한적인 정부권력은 누활하였다.

◆ 여기에서 Hayek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의 개념이다. 법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방지한다.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 정확한 개념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을 통해서만 정부권력의 제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III:100). Hayek는 입법권과 행정권(정부를 지시하는 권한)을 의회의 손에 줘 주게 되면서 법 아래의 정부(government under the law)라는 원리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법의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법이 자의적 정부(arbitrary government)가 내리는 명령의 이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래의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의 관념이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독재자의 결정이 법적일 수 있게 되고, 반면에 민주적 다수의 결정이 전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는 기막힌 현상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III:102).

주권을 가진 의회가 일반적 규칙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 전능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의적인 정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Hayek는 주장한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원리에도 들입(commit)하지 않는 정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부의 자의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정책을 통한 차별(discrimination)로 권한을 사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III:102).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 전능한 의회의 존재는 개인의 자유의 절멸을 의미한다. 자유: 법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고, 의회의 다수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허가장(license)을 뜻한다. Hayek

는 오늘날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대우라는 원리의 파괴는 저의성의 수문(floodgate)을 여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흔히 ‘사회정의’라는 말이 들먹거려지고 있는데, ‘사회정의’라는 말이야말로 일반국민의 회생위에 특수집단에 특혜를 부여하는 입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술방망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Hayek는 현대 민주주의는 정부권력이 특수집단과의 협상(deals)을 통해 다수의 의지를 서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본다(III:134). 이것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원래의 이상과는 무관하고, 모든 권력은 다수의견에 따라 인기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관념이나 원리와도 정면으로 비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특수집단의 요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협상에 돈을 의존하고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의 다수는 국민의 다수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회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곧 의회(그것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정부)가 국민을 압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헌법을 통해 정부권력을 제한한다는 관념과 모순되고, 자유인의 이상과 양립될 수 없다고 본다.

요약한다면 Hayek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공동행동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절차, 또는 정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동행동이 추구하는 목적이 특수집단에 특수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이 특정적(*particularistic*)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자유, 정의, 민주주의, 법의 의미가 모두 변질되면서 사회주의적 사고(socialist ideas)가 일반인들의 사고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거تان한다(III:137). 그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안전장치(safeguard), 우리를 권리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위생적 주의장치(sanitary precaution)라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 2. 정부권력과 사회질서(및 시장질서)의 관계

Hayek는 오늘날 사회질서에 대한 형성적 합리주의적 인식(constructivistic interpretations)과, 정의의 의의에 대한 오해야말로 부(경제), 도덕, 평화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한다(III:129). 그는 인류사회의 지고의 가치인 평화, 자유, 정의는 모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해방하는 요인을 제거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위대한 부정적(소극적) 가치(great ‘negatives’)를 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 가치의 실현을 방

해 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할 자유분명의 진보를 위한 유일하고 필수불가결한 기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III:131). 그는 독재와 암례로부터 보호기능을 하는 결차적 규칙인 민주주의도 위의 어느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부정적(소극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본다(III:133). 이런 의미에서 정부나 민주주의에 어떤 ‘적극적’ 내용을 부여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내를 들면 민주주의가 평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고(III:5), 소득분배가 정치권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III:13)인 바, 이것은 집단과 집단사이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서 이와같은 목적에 정부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결코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III:15). 사회의 부정의와 경제구조의 왜곡은 정부가 시장에 앞서고, 조직화된 집단에 호의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구하는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II:96).

이러한 관점에서 Hayek는 정부가 시장개입에 어떠한 개입도 자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화된 집단도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III:142). 소득의 결실(income-pie)을 나누어 가지려는 줄다리기에 정치가 한번 개입하게 되면 분수를 아는 정부(decent government)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III:150).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정치인에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자연발생적 질서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은 내적 필연성에 따라 정치가 경제적 과정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누적적 과정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III:151). 이런 의미에서 시장과 중앙집권적 지시(central direction)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정부는 어떤 특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기보다는 누군지 모를 다수의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수많은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리한 일반적 여건(favorable general conditions)을 조성하는 일에 주역하여야 하고, 이 때 사회는 벌진한다는 것이다(III:141).

### 3. 민주적 현법질서의 개편에 대한 제안

Hayek는 정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III:128). 그 역시 사회질서의 형성에 정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까지나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의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에서 정부가 강제와 폭력을 독점하자마자 개인의 자유는 위협을 받는다고 본다. 그는 17~8세기의 입헌주의자들이 유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정부권력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권력의 행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부권력의 성장을 막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sup>17)</sup>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 정부권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무지불식간에 포기되고 말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Hayek는 의회의 다수가 특수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적 이익을 부여하는 차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력을 아예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한다(III:128). 다수의 힘에 의한 지배를 상정하는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 대신에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민주체(demarchy)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III:39-40). <sup>17)</sup> 그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무제한적 의지에 의한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한 정부는 사악하며,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III:39). 그는 다수의 의지가 권리를 지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리면, 그 다수가 스스로를 일반적 규칙에 복종시킴으로써 정의롭게 행동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그는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또는 그것의 결과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원리가 잘못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릇된 방향으로 시험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III:98). 오랜데 형성적 합리주의적 사고방식, 자유사회에서 정의(justice)란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신념의 공설, 그 결과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unjust conduct)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한 봉이나 결과를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사회정의 문제적 정의라는 미명하에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의 바탕, 대의기관에 정의로운 행동규칙을 정하는 일과 정부를 지휘하는 일을 동시에 부여해 온 행정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Hayek는 민주주의의 원래의 이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가 3층의 체제(three-tier system)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III:38). 네 위의 정부는 자유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영역을 보호하고 정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의 반영구적 틀

17) demarchy는 demos(국민)과 archein(법에 의한 지배)의 합성어이다.

(semi-permanent framework)에 편심을 갖고 그 틀에 변화가 요구될 때에만 행동하는 입법의회 (legislative assembly)이다. 입법의회는 정당과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성숙한 지성인들로만 구성하고, 오로지 정부의 개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로운 행동규칙 (general rules of just conduct)의 제정을 책임지도록 한다. 다음총의 정부는 입법의회가 제정한 일반적인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첨진적 개선을 담당하는 행정의회 (governmental assembly)이다. 이것은 입법의회가 정한 법위내에서 정부의 일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끝으로 세삼총의 정부는 상위의 대의기관에 의해 주어진 자원을 관리하는 통상의 정부의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러한 Hayek의 주장은 다소 유치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회가 입법기능과 정부를 지시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정부권력의 무제한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정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지배가 실현되게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 IV. 결론 및 평가

이 장에서 Hayek의 대작, *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 집약되어 있는 자유주의사상,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 무제한적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는 흔히 별다른 생각없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Hayek는 오늘날 인류사회가 부지불식간에 사회주의의 물결에 휩싸여가고 있는 현실, 지성인조차 ‘사회정의’라는 말에 미혹되어 무책임하게 사회주의적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분명진보의 기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그의 한평생을 바쳤다. 그가 40여년 동안 줄기차게 추구해 온 문제는 바로 인간이성의 남용과 쇠퇴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 책은 그 문제에 대해 그가 끝없이 사색하는 가운데 얻은 답을 적어놓은 것이니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이성에 대한 자만(hubris)과 형성적 합리주의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유감없이 밝히고 있다. 비록 이 글에서 다 소개하지는 못하였지만 본래 경제학자인 그가 인간의 이성과 사회제도,

인류·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유김없이 원용하고 비판하면서 펼쳐 보이는 인류사회의 진화과정, 인류문명시에 대한 해석 등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다소 난해하기는 하나 지극히 논리적인 글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그 속에 숨어있는 오류를 여지없이 파헤치는 그의 통찰력을 그저 감동과 감탄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물론 여기서 소개한 Hayek의 사상과 철학이 완벽한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아직은(필자의 생각으로 금세기 최고의 학자인) Hayek의 사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아직은 그의 노련한 논리에 압도되어 있다고 말하는 편이 보다 정확한지도 모른다. 필자가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고백일 뿐이다.

필자는 지난 수개월 동안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의 전면목에 접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계 전반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사고에 휩싸여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의 철학적, 지성적 토대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폐쇄적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해 보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나없이 형성적 합리주의적 사고에 깊숙이 빠져 있는 나머지 너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처방을 사회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서구와는 다른 동양의 문화를 이어받고 있고, 우리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전통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 이상 Hayek의 철학과 사상을 맹·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와 국가의 관계, 법과 자유의 관계, 시장질서와 정부권력의 관계의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Hayek의 철학과 사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훌륭한 시급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신보수주의라고 매도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온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요즈음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사고가 아직도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기이한 현실이 아닌가?

## 참 고 문 헌

Kegan Paul, 1982), paperback edition.

(I) Volume 1: Rules and Order

(II)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III) Volume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Popper, K.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Volume 1: Plato

Volume 2: Hegel and Marx